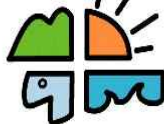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공  보

제1183호 2018년 12월 10일(월)

조 례

- 속초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2

공 고

- 속초시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6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2 월 10 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640호

속초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민원상담인을 위촉하여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민원상담인의 자격) 민원상담인(이하 “상담인”이라 한다)은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제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그 밖에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

제4조(임기) 상담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직무 등) 상담인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민원에 대한 상담과 안내
2. 고충·복합민원 처리지원 및 관련부서 협의
3. 각종 행정정보 제공 및 시책 등 홍보

제6조(근무) ① 상담인의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상담인은 종합민원실에 상주근무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민원상담 일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상담인은 민원 상담과정이나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위촉 해제) 상담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의 장애로 업무수행을 감당할 수 없을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상담인의 대우) 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나 그 밖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원상담일지

년 월 일 요일

결재	상담인	과 장

민원인적사항						
성명		연락처				
주소						
분야별 상담건수 (금일 / 누계)						
합계	녹지환경	건설도시	인·허가	토지지적	생활민원	기타
주요민원 상담내용						
처리경위 및 경과 (특이사항)						
건의사항						
관련부서						

◇ 제정 이유

최근 건설경기 활성화로 인하여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복합·고충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함을 듣고 소통할 수 있는 민원상담인 제도를 도입하여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2월 7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심사 추천시,
 - 제조업의 경우 시설자금, 운전자금 등 용도 구분에 따른 감점기준이 없으나,
 - 대부분의 영세 소상공인이 해당되는 비제조업의 경우 시설자금 (감점 없음), 시설 + 운전자금 (감점 5점), 운전자금 (감점 10점)으로
 - 운전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종업원 5인미만 (추가감점 5점), 매출액 1억원미만 (추가감점 5점)의 대다수 영세 소상공인은 현재 심사기준으로 신청액의 100%를 지원받기가 불가능한 바,
 - 용도에 따른 감점항목을 삭제하고 종업원과 매출액 기준 평가항목을 세분화하여 현행 문제점을 개선 보완코자 함.

3. 주요내용

○ 별표 2 비제조업의 경우 평가항목 3. 사용용도를 삭제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함 (안 별표 2)

2.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별표 ‘지원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 (제1호에 해당하는 제조업체 제외)

[개정 전]

분 야	계	평 가 항 목	점수	구 비 서 류
계	100			
1. 주민소득 및 고용증대 기여도	40	종업원 5명 이상 종업원 5명 미만	40 3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지역경제 기여도	40	매출액 1억 원 이상 매출액 1억 원 미만	40 35	재무제표 또는 매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용용도	20	시설개선자금 시설 + 운전자금 운전자금	20 15 10	사업계획서에 의해 확인

[개정 후]

분 야	배점	평 가 항 목	점수	구 비 서 류
계	100			
1. 주민소득 및 고용증대 기여도	50	종업원 5명 이상 종업원 1명 이상 5명 미만 종업원 없음	50 45 40	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등)
2. 지역경제 기여도	50	연간 매출액 1억원 이상 연간 매출액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간 매출액 3천만원 미만	50 45 40	재무제표 또는 매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용용도에 의한 배점(20점)을 삭제하고 1. 주민소득 및 고용증대 기여도와 2. 지역경제 기여도의 배점기준을 각각 50점으로 상향하고 평가항목을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함.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2. 31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경제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경제진흥과 경제노정팀
- 연락처 : 전화(033-639-2252), 팩스(033-639-2465)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자치행정과 경제노정팀(☎033-639-225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용자추천 심사기준 및 평가표 (제5조 관련)

□ 심사항목

1. 추천한도액
2. 매출액
3.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4. 기업의 재무상태
5.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기여도

□ 용자신청 심사기준

- 평가점수 90점 이상 ----- 신청금액의 100퍼센트 추천
- 평가점수 90점 미만 ----- 신청금액의 90퍼센트 추천

□ 평가표

1. 제조업체 ※ 전업률¹⁾ 30% 이상인 경우에만 제조업으로 본다.

분 야	배점	평 가 항 목	점수	구 비 서 류
계	100			
1. 주민소득 및 고용증대 기여도	30	종업원 11명 이상 종업원 10명 이하	30 25	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2. 공장입지	30	농공단지 개별입지	30 25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사본
3. 지역생산 증대 기여도	30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	30 25	재무제표 또는 매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관내에 본사소재	10		10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 전업률 : 총매출액 대비 제품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2.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별표
 ‘지원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 (제1호에 해당하는 제조업체 제외)

분	야	배점	평 가 항 목	점수	구 비 서 류
계		100			
1. 주민소득 및 고용증대 기여도	50	종업원 5명 이상 종업원 1명 이상 5명 미만 종업원 없음	50 45 40	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서 등)	
2. 지역경제 기여도	50	연간 매출액 1억원 이상 연간 매출액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간 매출액 3천만원 미만	50 45 40	재무제표 또는 매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u> 제4조(융자 추천 신청 등) ①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융자 추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및 금융기관 대출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u>1.</u> ~ <u>4.</u> (생략) ② · ③ (생략)	<u>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u> 제4조(융자 추천 신청 등) ① --- ----- ----- ----- ----- ----- --. 1. (현행과 같음) <u>2.</u> ~ <u>5.</u>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